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예수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예수대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에 둔다.<개정 2017.5.1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2019.10.14>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예수병원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①이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의하여 법인 및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재학생은 각 2명,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2.7.>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6.12.28.>

제13조 삭제 <2006.12.28.>

제14조 삭제 <2006.12.28.>

제15조 삭제 <2006.12.28.>

제16조 삭제 <2006.12.28.>

제17조 삭제 <2006.12.28.>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9.7.10.>

1. 이사 12명(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6.12.28., 2019.3.29.>
2. 감사 2명

② 대학교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 임기는 당연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세례를 받은 복음주의적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일에 공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②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각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부정, 부당한 행위로 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없게 된 때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이 제18조의 임원 중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09.7.10.>

[본조신설 2006.12.28.]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자격) ① 법인의 개방이사는 제20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 2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이사에 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이사장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9.7.10.>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7.10.>

[본조신설 2006.12.28.]

제20조의 5(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제20조의 2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인 추천자 2명
2. 대학평의회 추천자 3명

[본조신설 2009.7.10.]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2.28.>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6.12.28.>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신설 2006.12.28.>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이하 “추천 감사”라 한다)<신설 2006.12.28.><개정 2009.7.10.>

⑦ 제 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12.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2.28.>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1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6.12.28.]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8.>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신설 2006.12.28.>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

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삭제 <2009.7.10.>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4.>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개최한다.<신설 2006.12.28.>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2.28.>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를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10.>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정 및 재산 관계 업무에 있어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의 2(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12.28., 개정 2020.12.10]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이사가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회의 7일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2.7.>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를 소집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2.28.>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사업

2. 기타

제5장 해산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0.>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산하에 속한 교육기관에 귀속한다.<개정 2009.7.10.>

제35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0.>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36조(임용)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하되, 그 임기는 4년
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총장 유고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8., 2019.10.14>

②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강사와 명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2.,
2019.10.14>

③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일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6.12.28.>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및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7.23.>

2. 급여 : 보수규칙에 의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간
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임
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을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2009.7.10.>

1. 대학의 교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9.10.14.>

- 가. 교수 정년
- 나. 부 교수 7년
- 다. 조 교수 6년<개정 2012.07.23.>
- 라. 삭제<개정 2012.07.23.>
- 마. 삭제<개정 2015.12.22.>

2. 교수 정년에 따른 세부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대학의 처장, 학부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12.22., 2019.3.29.>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8.><개정 2019.10.14.>
- ⑦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용하며,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2.>

제36조의 2 삭제 <2002.4.>

제36조의 3 삭제 <2006.12.28.>

제36조의 4(신규 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 인원이 3인 이상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③ 교원의 신규 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사항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중에서 총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개정 2009.7.10.>

⑤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⑥ 삭제 <2009.7.10.>

제36조의 5(기간제 임용된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근 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 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6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7.10.>

1. 교 수 : 정년보장
2. 부 교 수 : 7년
3. 조 교 수 : 6년<개정 2012.07.23.>
4. (삭제)<개정 2012.07.23.>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임용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 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총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5.12.22.>

제36조의 6 삭제 <2009.7.10.>

제36조의 7(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관 신 분 보 장

제37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19.10.1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5.11.>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7.5.11.>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한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개정 2017.5.1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7.5.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9.7.10.>
9.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개정 2017.5.11.>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17.5.11.>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7.5.11.>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개정 2017.5.11.>

제38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인당 1년 이내로 하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인당 6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7.5.11.>
7.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5.11.>
9. 제11호에 의한 휴직은 제4호와 제5호의 기간을 준용한다.<개정 2017.5.11.>
10. 제12호의 휴직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5.11.>

제39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휴직교원 처우) ① 제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11.>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1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삭제 <2017.5.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19.10.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7.5.11.>

⑤ 임용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5.11., 2019.10.1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⑦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20.12.10>

⑧ 삭제 < 2020.12.10>

제42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의 2(명예퇴직) ① 이 법인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4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8., 2019.10.14>

제4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8.>

1. 총장이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제청 및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2., 2019.10.14>
2. 총장이 제36조 제5항의 보직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2., 2019.10.14>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6조 제3항 제4호를, 정관 제3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6조의 5의 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제46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서기와 간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1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5.11.>

1. 해당 대학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7.5.11.>

1. 제2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외부위원은 우리대학 법인이사 또는 교원은 될 수 없다.
3. 교원징계위원회는 우리대학 법인 이사인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개정 2017.5.11.>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17.5.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 5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가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5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③ 임용권자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5.11.,2019.10.14.>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정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서기와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0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1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기술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신고 세례 교인으로 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 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4절 대학평의위원회<신설 2006.12.28.>

제66조의 2(대학평의위원회 설치)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19조2 제1항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3.13.>

[본조신설 2006.12.28.]

제66조의 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13.>

1. 교원 3명 <개정 2018.3.13.>
2. 직원 2명
3. 학생 3명 <개정 2018.3.13.>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개정 2020.12.10.>
6. 조교 1명 <신설 2020. 12.10>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28.]

제66조의 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5호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3.13.>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된 자<개정 2018.3.13.>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85조의2 직원회에서 추천된 자<개정 2018.3.13.>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 및 각 학부 학생회에서 추천된 자<개정 2018.3.13.>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된 자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66조의 5(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 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66조의 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6조의 3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9.7.10.>

[본조신설 2006.12.28.]

제66조의 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학현장의 제개정, 제3호,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9.7.1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9.7.10.>
5.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28.]

제66조의 8(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개정 2020.12.10.]

제66조의9(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법인임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학생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10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5/10 미만이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66조의10(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67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로 보하고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수익사업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2절 대 학 교

제68조(총장 등) ① 예수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68조의 2(명예총장) ① 전임총장의 경륜을 학교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0.]

제68조의 3(대학원장)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본조신설 2011.11.15.]

제69조(기구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5.12.22.>

② 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06.12.28., 2018.3.13.>

③ 각 처·실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8.>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 2(총장 직속기관) 총장은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9.3.29., 2023.2.7>

제70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9.3.29.>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정보지원부와 정보운영부를 둔다.<개정 2018.3.13., 2019.1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2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2조의2(청렴의무) 본 법인 이사장 및 임직원, 대학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23.2.7.>

제72조의3(사학기관 행동강령) ①제72조의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23.2.7.>

제8장 보 칙

제7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일보에 공고 한다.

제7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이사명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명	자격	임기	주소
이사장	김 윤 식	1901. 5. 28	교 회	목 사	4	전북 전주시
이 사	안 광 극	1909. 3. 16	교 회	목 사	4	서울특별시
이 사	최 승 열	1933. 5. 23	교 회	교 육 자	2	전북 전주시
이 사	박 신 배	1924. 2 9	타 지 역	의 사	2	전북 이리시
이 사	송 정 석	1918. 1. 28	타 지 역	교 육 자	2	서울특별시
이 사	유 수 만	1930. 9. 20	설 립 자	치과의사	4	전남 광주시
이 사	타 요 한	1912. 9. 23	설 립 자	교 육 자	2	서울특별시
이 사	이 거 보	1932. 12. 11	설 립 자	교 육 자	2	전북 전주시
이 사	서 진 주	1927. 6. 16	설 립 자	간 호 사	4	충남 대전시
이 사	공 순 구	1934. 5. 10	기타지역	간 호 사	4	전북 전주시
이 사	설 대 위	1925. 4. 4	병 원 장	의 사	4	전북 전주시
이 사	계 자 애	1917. 2. 9	교 장	간 호 사	2	전북 전주시

학교법인 감사명단

감 사	김 인 석	1912. 12. 3			2	강원도 원주시
감 사	윤 호 영	1926. 10. 2			1	전북 전주시

부 칙

- ① 이 정관시행에 따르는 필요한 규칙 및 세칙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 ②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③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⑥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⑦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⑧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⑨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⑪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본 대학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⑫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⑬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⑭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⑮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⑯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⑰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사건은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예수간호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예수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예수간호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36조의 4 및 제

36조의 5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 정관 제36조의 4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 정관 제36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초대총장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정관 제36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수간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임기를 6년으로 임용한다.
-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예수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2003학년도 말까지 "예수간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예수간호대학교의 직원으로 보되, 교원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예수간호대학"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⑦ (예수간호대학 및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예수간호대학은 2002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동학교는 2005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폐지전에 입학한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되,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예수간호대학교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 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예수간호대학교에서 관리한다.
- ⑧ (재산에 대한 경과 조치) 예수간호대학의 모든 재산은 폐지인가와 동시에 예수간호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예수간호대학교"에 임용된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예수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 규정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는 개정 규정의 조교수 승진년수(6년)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개정 이전 규정의 승진 소요년수(4년)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소요년수 산정은 조교수 최초 임용일로부터 계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5조 제2항 및 제7항의 “강사”에 대한 규정 적용은 고등교육법 제 14조의 2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법인일반직원정원

총 계 2명

일반직계 2명

4급(참사) 1명

9급(부서기) 1명

[별표 2]

학교일반직원정원

<개정 2013.5.7., 2019.10.14.>

총 계 13명

일반직계 10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기술직계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삭제 2019.10.14.>

<삭제 2019.10.14.>